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2
----------	-----

제출년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1)
 -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의2)

3. 근거법규 : 「공무원여비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0. 8. 30 ~ 9. 20(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를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중 “여비규정”을 각각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숙박비란 중 “30,000”을 “4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u>-----</p> <p>-----</p> <p>-----</p>
<p>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 ③(생략)</p>	<p>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p> <p>-----<u>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p> <p>-----.</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u>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u> 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p> <p>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여비규정</u>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u>영</u>”이라 한다)-----</p> <p>②-----</p> <p>-----<u>영</u>-----</p> <p>-----.</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u>의하여</u> 지급한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p> <p>-----</p> <p>-----<u>따라</u>-----</p> <p>-----.</p>
<p>제4조의2(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하되,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u>의한다</u>.</p>	<p>제4조의2(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p>-----</p> <p>-----<u>영</u>-----</p> <p>-----<u>영</u>-----</p> <p>-----<u>따른다</u>.-----</p> <p>1. <u>영</u>-----</p> <p>-----</p>

현 행	개 정 안
1.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공용차량관리규정」-----「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 -----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 -----
8. 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적용함에 있어 2급 및 3급 공무원 또는 4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 1호가목을, 4급 및 5급공무원 또는 4급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 2호가목을,	8. 영----- ----- ----- ----- -----

현 행	개 정 안																																				
<p>그 외의 공무원은 제 2호나목의 기준에 의한다.</p>	<p>----따른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5%;">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5%;">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5%;">자동차 (버스) 운임</th> <th style="width: 15%;">숙박비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제2호</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5%;">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5%;">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5%;">자동차 (버스) 운임</th> <th style="width: 15%;">숙박비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	(현행과 같음)					-	-	-	-	-	4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	(현행과 같음)																																				
-	-	-	-	-	40,000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8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10. 8(금)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10. 10. 11(월)
- 라. 위원회 상정 : 2010. 10. 19(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전병수)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1)
⇒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의2)

5. 관련법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1452호)

6. 검토의견

-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려는 것임.
- 나. 이에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 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 이는 관외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